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

행정기획위원회(자치행정과)

의안번호	제 66 호
제 출 자	성북구청장 (2022. 11. 14.)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전문위원 정진만

### 1. 제안이유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4.26. 공포)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서 18세로 규정(개정법 제5조제1항)하고 있어 조례에서 '19세' 규정 삭제(안 제3조 개정)
- 나. 주민투표 대상을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으로 규정(개정법 제7조)함에 따라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삭제)
-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및 '거소' 표현 삭제(안 제8조제1항, 제9조 개정)

라.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0조, 제12조)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안 제8조제1항 개정)
-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안 제10조제1항 개정)

마.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반 단위로 실시(개정법 제16조제1항 단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반 단위로 작성(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개정법 제12조의2)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안 제12조 개정)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에 따라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 : 안 제13조(심의회 위촉위원 임기), 제14조(심의회 운영), 제15조(심의회 간사), 제16조(심의회 운영세칙) 신설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이 적용되므로 삭제 : 안 제12조제9항 삭제

사. 주민투표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단서 신설)

-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아.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수정)
- 동 이하 소규모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

의 표지에 대한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수정)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등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거주지’ 삭제(별지 제1,2,3,4,5,6,7호 서식 수정)

자. 그 밖에 띄어쓰기 등 정비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민투표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2022. 9. 29. ~ 10. 19.(20일), 의견 없음

#### 4.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 2022.10.27.) 됨에 따라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8조1)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본 조례는 이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 19세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
      - 변경 이유는 **법 제5조제1항2)**에서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8세로
- 
- 1) 「지방자치법」 제18조(주민투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2)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제** : 상위법률인 주민투표법이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을 개정된 법 제7조에 직접 규정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임.

현 행	개 정(' 22. 10. 27. 시행)
<p>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u>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lt;개정 2016. 5. 29.&gt;</p>	<p>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u>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u> &lt;개정 2022. 4. 26.&gt;</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lt;개정 2016. 5. 29., 2022. 4. 26.&gt;</p>

▪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 제1항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대해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주소나 거소’ 표현 삭제
- 제2항 :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는 현행 조항 후단에 “다만, **법 제16조제1항3)**의 규정에 따라 통·반 단위에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3)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

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를 변경하려는 것임. 이는 ‘동’ 보다 작은 구역에서 주민투표요구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관할구역의 일부를 통·반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안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 조문 중의 내용과 괄호 제목이 맞지 않아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로 변경.
  - 조문 중 ‘별지 6호’ 서식과 부합하게 주민투표청구서 작성 내용의 순서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로 변경
- **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 ‘청구인서명부’ 열람과 관련하여 열람 대상인 청구인서명부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열람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을 괄호로 약식 처리한 것임.
- **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주민투표청구심의회) :** 개정된 **법 제12조의24)** 신설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

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 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 4.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4)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함.

- 안 제12조 주민투표정구심의회 구성 : 법 제12조의2제4항이 규정한 부분 중 심의회 구성에 관한 것으로 조문 내에 상위법 조문 근거를 넣어 법과 조례의 연계적 이해를 돕고 있으며, 심의회의 위원수 7명과 심의회 의장을 부단체장으로 하는 규정은 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어 삭제함.
- 안 제13조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 : 임기 2년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
- 안 제14조 심의회의 운영 등 : 의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에 의한 회의 소집, 의장의 직무대행, 회의운영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규정함.
-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수당)<sup>5)</sup>이

---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 5) 제18조(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적용되므로 삭제(안 제12조제9항 삭제)

- 안 제15조 심의회 간사 : 심의회 간사와 주민투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지명 관련 사항을 규정
- 안 제16조 심의회 운영세칙 : 심의회 운영세칙 마련 근거를 규정함.

- 부칙 : 법 개정규정 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례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
  -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중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사항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며, 이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부칙 시행 관련 제1조<sup>6)</sup>를 따른 것임.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구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6) 부 칙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제12조의2, 제18조의2, 제2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28조제6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2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3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9항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